

주술적 홀림과 망령들의 재현*

—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노트 —

김형주**

목 차

1. 망자들의 유언과 산 자들의 몸부림
2. 과거청산이라는 '정화'의식과 '염승(厭勝)
3. 혼령들의 재림, 망자들이 생전에 남긴 말과 사후의 육신
4. 탈주술, 가라앉은 것들의 부상과 불가능한 화해를 위하여

| 국문초록 |

이 글의 목적은 5·18항쟁에 대한 제도적 청산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과거청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국가주도의 5·18항쟁 과거청산의 의미와 그것이 생산한 효과를 분석하고, 항쟁 당시 사망자의 목소리를 빌어 과거청산의 목적과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국가에 의한 5·18과거청산은 정형화된 의례였다. 그것은 고도로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산 자들의 몫과 목소리를 하나하나 탈각시켜 나갔다. 피의자들은 정치적 타협으로 소생했고, 제정된 법률은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산 자들의 무형의 고통을 유형의 수치로 계산하고 측정될 수 없는 고통은 외면했다. 그것은 또한 정화의식을 가장한 배제된 자들에 대한 소독(방역)작업이었다. 국가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킨 대신에 법적 테두리 안에 그들을 고정시켰다. 문제는 절차상 5·18항쟁에 대해 조

*이 논문은 2019년 광주광역시 '5·18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이 논문은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여기서 '주술'은 5·18과거청산을, '홀림'은 5·18과거청산의 효과를, '망령들의 재현'은 5·18에 대한 왜곡과 편향을 가리킨다.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사를 했고, 가해자를 처벌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이유로 청산작업에 대한 비판이 봉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반쪽짜리 청산으로 인해 왜곡과 폄훼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다음으로 망자들의 마지막 말과 마지막 육신의 상흔은 ‘같이 살고 싶으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앞으로의 과거청산은 같이 살았거나 같이 살아갈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방향에서 국가가 아닌 시민들이 주도할 것을 제안한다. 항쟁 당시 총을 들었던 자, 트럭에 탔던 자, 밥을 주었던 자, 골목과 집에서 숨죽였던 자, 피난 갔던 자, 그리고 반대에 서서 숨을 헐떡였던 자들이 무대로 올라와 증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5·18항쟁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묵도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회적 청산에 동참해야 한다. 작게는 위로의 말부터, 후원과 자조 모임 참여, 굿 혹은 잔치 개최 등 사회적·문화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진정어린 과거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5·18, 광주항쟁, 과거청산, 이행기 정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 칼 쥐고 총 가진 자들
 싸늘한 주검 위에 찍힌 독재의 흔적이
 검붉은 피로, 썩은 살로 외치는구나

더 이상 욕되지 마라
 너희 멸사봉공 외치는 자들
 압제의 칼바람이 거짓 역사되어 흘러도
 갈대처럼 일어서며 외치는구나”

(정태춘, ‘일어나라, 열사여’ 중에서)

1. 망자들의 유언과 산 자들의 몸부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죽은 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죽은 자는 무슨 말을 하는가? 공포, 불안, 억

울함, 분노, 슬픔, 회한, 고통, 경련, 부릅뜬 눈과 벌어진 입 그리고 혀. 5·18 항쟁 이후 죽은 자의 찢긴 몸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알 수는 있었던 유언을 산 자들에게 각인시켰다. -그 유언은 ‘무엇, 무엇’이었다. 산 자들은 죽은 자의 목소리를 산 공간에 투영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는 것과 동시에 ‘폭도’와 ‘불순분자’라는 망령을 내쫓는 푸닥거리에 나섰다. 그들은 자욱한 최루탄 가스 속에서도 ‘학살’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과 마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분풀이자 원풀이었으며 살풀이었다. 그것은 오직 항쟁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의 ‘객기’가 아니었다. 망월동에서 망자들의 피비린내와 산 자들의 울음이 진동할 때마다, 광주도 몸을 떨었다.

이른바 ‘5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 쟁투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가로지르는 시대 운동이었다. 자식을 잃은 ‘엄나’들은 망월동에서,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국회 앞에서, 청와대와 연희동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거리와 거리에서 오열하고 절규했다. 유족들은 온갖 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고, 대통령이나 정부요인이 광주를 방문할 때면 경찰이 집에 상주해 밖을 나갈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경찰서에서 감금되거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전국의 절과 골짜기로 끌려가 버려졌다. 구속자와 부상자들도 망자들을 위해 추모제를 열고, 진상을 규명하고, ‘살인마’를 고발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들이밀었으며, 끊임없이 끌려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학생들도 유족들의 눈물에 동참해 잡혀가고, 분신하고, 열을 짓고 돌진했다. 80년대와 90년대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5·18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학생들은 유인물을 이용해 광주의 진실을 알리거나 목숨을 던져 5·18항쟁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초창기 유인물을 이용한 산발적인 시위는 점차 조직적으로 발전했으며, 전국적으로 확

대되었다. 각 대학의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건설하고 이를 전국적인 학생연합조직으로 발전시켰으며 광주학살자규탄집회와 ‘전·노 체포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쉽 없는 투쟁에 나섰다. 시민들 역시 투쟁의 행렬에 동참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활동과 기념사업에 나섰다. 5·18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 나갔다. 이들은 연대조직을 구성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망자들의 유언 ‘무엇, 무엇’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이라는 5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¹⁾ 그리고 기나긴 5월 운동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1995년 12월 19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5·18항쟁에 대한 제도적 청산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이후 5·18항쟁은 1997년 국가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망자들은 망월동 구(舊)묘역에서 새롭게 단장된 신(新)묘역으로 이장되었고, 국가는 유족들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유공자로 지정함으로써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로써 5·18항쟁에 대한 제도적 청산작업은 어느 정도 완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5·18은 격렬한 다툼과 불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군홧발과 곤봉, 대검과 총탄으로 절명했던 5월의 원혼은 왜곡으로 점철된 논쟁 속에서 비아냥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차가운 미소와 단말마적 분개, 한숨 섞인 무시와 체념이 뒤섞인 지금, 5·18은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은 5·18항쟁에 대한 제도적 청산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끊임 없이 반복되는 국가 폭력과 5·18왜곡·편향을 극복하고 과거청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쓰여졌다.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청산의 기본원칙 및 그 실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거

1) 1993년 봄 광주지역의 시민사회와 5·18단체들이 1박 2일 동안 치열한 토론 끝에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을 정했다(김양래, 2016: 16).

청산의 쟁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한다(한인섭, 2002). 그리고 5·18항쟁에 대한 “청산작업은 진상규명 없는 보상을 거치며 일그러져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기보다 “반면교사”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이광일, 2004). 또한, 과거청산 작업의 모델이 되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과거청산 작업을 대상으로 이행기 정의 및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면서 트라우마 문제가 과거청산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최정기, 2006). 첫 번째 연구가 5·18과거청산을 어느 정도 평가하면서 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연구는 청산작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 번째 연구는 법적·제도적 청산과정과는 별개로 사회적 청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5·18항쟁의 과거청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보다 세밀한 접근을 통해 청산작업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5·18사법처리와 법제화 과정을 구분하여 분석하거나(이영재, 2004),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광주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등 대표적 피해보상 모델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사법부의 국가배상 기준과 대비하여 고찰”하여, 피해보상이 “배상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이영재, 2010). 또한, 피해보상이 “제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동의구조의 형성 배경과 맥락, 법률에 근거한 국가 보상제도의 등장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과 차이, 보상 제도의 운영 주체가 지닌 특성, 제도적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정호기, 2006). 연구들은 과거청산이 “민주주의, 인권(생명권),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사회적 지층에서 확립했을 때 비로소 미래를 향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피해배상에서는 “사회적 반성과 성찰”이 동반되어야 하며, “과거청산 작업을 위한 충분한 조건과 지원 그리고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영재, 2004; 2010; 정호

가: 2006).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5·18과거청산 과정에 대한 한계를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하고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적 청산,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과거청산이 생산한 효과들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청산과정의 문제와 한계에만 주목한 나머지 청산작업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그리하여 그것이 어떻게 청산작업에 역작용하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과거청산작업의 의미와 그것이 생산한 효과를 분석하고, 과거청산의 목적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물음들과 맞닿아 있다. 국가가 5·18항쟁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고 명예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5·18항쟁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일까? 혹시 5·18항쟁 해결을 위한 5원칙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국가 주도의 청산작업이 어떤 효과를 생산했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이라면 그것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이 글은 국가 주도의 5·18항쟁 과거청산 작업을 검토하고 이를 항쟁 당시 사망자의 목소리를 빌어 근본적으로 재성찰한다. 망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은 그들이 5·18항쟁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이며, 현재 청산작업의 어떤 교착 상태 혹은 역행을 극복할 무언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청산작업도 망자들의 유지를 받든 산 자들의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이 글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과거청산의 방향과 방식을 재성찰해 보자는 것이다. 이 글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항쟁 과거청산 과정은 어떤 문제를 내

포하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둘째, 5·18항쟁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셋째, 5·18항쟁 과거청산 작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2. 과거청산이라는 ‘정화’의식과 ‘염승(厭勝)’²⁾

2.1 정형화와 단순화

5·18항쟁에 대한 과거청산은 폭력을 행한 국가, 정확히 말해 신군부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후 행해졌다. 신군부 출신 장군은 대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으나 국민들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었다. 5·18항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논의는 1988년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작되었다. 민주화합추진위원회는 “광주의 학생·시민들의 민주주의적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재정보조, 의료서비스, 기념물 건립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해서는 함구했다(한인섭, 2002: 191-192). 이 후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청문회와 검찰수사, 법률제정과 조사위원회를 통해 5·18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2) 불리하게 작용하는 강한 힘, 또는 기운을 누르거나 꺾기 위한 주술. 조선시대에도 위로는 궁중에서부터 아래로는 민간에 이르기까지 염승에 의지하는 일이 많았다. 염승의 목적은 다양하였다.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영웅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도 염승을 했고, 죽은 자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그의 무덤에 염승을 했으며,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도 염승을 했다. 심지어 국가에서도 가뭄이 계속될 때는 북 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것은 북소리로 말미암아 북돋아질 수 있는 양기를 누르기 위해서였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검색 ‘염승’, 조선왕조실록전문사전, 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3-CKD-1240001&dataID=0010254@AKS-2013-CKD-1240001_DIC. 검색일: 2019년 4월 26일).

<표 2-1> 국가차원의 제도적 청산과정³⁾

구분	방식	내용	주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청문회	1988-89년 제13대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회	국회
	검찰수사	1994년-95년 검찰 수사: 12·12쿠데타 '기소유예' 5·18 '공소권 없음'	사법부
	검찰수사	1996년 전두환 등 5·18핵심관련자 기소	사법부
	법률제정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법률제정	1995년 12월 21일 현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검찰수사	1996년 1월 18일 12·12와 5·18 기소	사법부
	법원판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두환 무기, 노태우 17년	사법부
	정부조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조사	행정부
	정부조사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행정부
	법률제정	2018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피해 배상과 명예 회복	법률제정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국회
		2002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2004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국회
정신 계승	기념일 지정	1997년 5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	행정부
	기념식 참석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03년-2007년 노무현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참석	행정부

3) <표 2-1>은 한인섭(2002), 노영기(2017)의 논문과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법령센터, 신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표 2-1>에서 보듯이, 5·18항쟁 과거청산은 5원칙에 비추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회청문회, 검찰수사와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법제정 등을 통해 진행되었고,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은 보상 법률과 유공자 예우 법률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신 계승은 국가 차원의 기념일 지정과 기념식 마련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진상규명에 관한 활동은 1988년 5·18광주민중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광주특위)의 조사로 출발하였다. 청문회는 1988년 11월 18일부터 99일간 총19회 개최되었으며 64명의 증인이 나와 증언했다(김영택, 2017: 671-672). “청문회에서는 학살만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날선 공방이 전개되었다. 이 실황은 각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으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나간채, 2012: 145). 청문회는 최초로 ‘광주사태’를 공론의 장으로 소환했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끝맺음을 하지 못함으로써 미완의 과제만을 남긴 채 종결되었다. 다음으로 2000년대에는 진상규명 활동이 주로 정부차원의 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5·18재판기록과 군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역 군인과 전역한 민간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5·18항쟁은 “신군부가 권력 획득을 위해 군을 사조직처럼 사용한 것 이라고 결론 내렸다”(노영기, 2017: 207). 2017년에는 ‘국방부5·18특별조사 위원회’가 5·18항쟁 당시 헬기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설의 실체에 대해 접근했다.

둘째, 책임자 처벌은 검찰과 법원의 사법처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4년 5월 13일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관계자 294명은 전·노씨와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한인섭, 2006: 83). 하지만 검찰은 1994년 말에 12·12쿠데타에 대하여는 군 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1995년에는 5·18

에 대해 내란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처분을 내렸다(한인섭, 2002: 191-192). 이 같은 결정은 곧바로 국민들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압박에 떠밀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법률을 통해 내란죄와 반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게 되었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이 재판관을 통해 기소를 강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수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한인섭, 2002: 194). 이 과정을 통해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주요임무종사자는 3년 6월부터 8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책임자 처벌이 종료되었다.

셋째, 피해배상의 법적 기반은 1990년 8월 17일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 법은 2006년 3월 24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센터, 보상법 제1조). 이 법에 따라 1990년 피해자에 대한 1차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1993년에 2차 보상, 그리고 2014년까지 7차에 걸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명예회복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하 유공자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센터, 유공자법 제1조). 이에 따라 5·18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고, 유족과 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등의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정신계승은 1997년 5월 국가가 ‘5·18민주화운동’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면서 공식화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전 기간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에 기념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묵념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5·18항쟁 희생자를 기리고 있다.

국가에 의해 진행된 과거청산은 하나의 정형화된 의례였다. 그것은 고도로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산 자들의 몫과 목소리를 하나하나 탈각시켜 나갔다. 피의자들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정교하고 기만적인 논리를 생산했고 정치적 타협으로 소생했다. 제정된 법률은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산 자들의 무형의 고통을 유형의 수치로 계산하고 측정될 수 없는 고통은 외면했다. 그리고 기념의식은 대단할 것 없는 엄숙함으로 산 자들이 뿜어내는 생기를 억눌렀다. 결국, 산 자들이 집약시킨 광주해결 5원칙은 국가의 체계 안에서 단순화되었다. 항쟁이 담고 있었던 무수한 ‘무엇’이 소멸되고 특정 형태만이 남아 화석화되었다. 사실 항쟁은 구조적, 정치적, 윤리적, 상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거기에는 공적 목적과 사적 경험, 이성과 감정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따라서 항쟁은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로 단순화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항쟁에서 살아남았으나 말하지 못한 자와 살아 끊임없이 외쳤던 자 사이의 간극을 벌려 놓았다.

2.2 정화소독결박⁴⁾

국가에 의한 과거청산은 비단 산 지들 사이의 간극만을 벌려놓은 것은 아니다.⁵⁾ 과거청산은 5·18항쟁을 ‘정화’된 것으로, 오염되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고 숭고한 것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이때의 정화는 장수가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는 정화도, 제사장이 죽은 자를 위해 제를 지내기 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정화도 아니었다. 장수나 제사장의 정화는 자신의 더러움을 씻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5·18항쟁 과거청산에서 정화는 국가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행위라기보다 상대방, 즉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더러움을 씻는 행위였다. 보상과 유공자대우, 기념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한 것이 이의 방증이다.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척 했으나 진상에 다가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처벌의 수위와 폭은 매우 좁았으며, 그마저도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사면되었다.

또한, 청산의 와중에도 국가는 저항운동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는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여부와는 상관없이, 즉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우자동차, 부안방사능폐기장, 광우병쇠고기춧불, 용산과 쌍용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저항운동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과거청산 작업이 국가가 행한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면, 이때의 폭력은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다. 한쪽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을 기억·기념하

4) ‘정화’와 ‘소독’은 둘 다 위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화’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반면, ‘소독’은 감염을 막는 차원에서 균을 죽이기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 차원의 과거청산이 국가 자신이 과거에 범한 더러움을 씻는 ‘정화’의식이 아니라, 국가에 저항했던 자들을 ‘소독’함으로써 또 다른 저항의 확산을 막는 장치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면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반복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정화는 사실 ‘소독’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통제 불가능한 신체들을 줄 세워 약을 뿌리고 관리의 세계로 편입시켰다. 이 행위는 대단히 거칠었고, 또 다른 비참함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 국가는 복종을 강제했다. 염을 해주긴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는 무언의 압박이 가해진 것이다. 국가가 ‘시혜’를 베풀어 용서했고, ‘정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국가는 이런 신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과거청산의 지난하고 지지부진한 과정이 이를 증명한다. 즉 다른 사건(한국전쟁, 4·19, 부마항쟁 등)은 별다른 논쟁없이 지나갔지만, 5·18은 계속해서 논쟁을 확산시켰고 정권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은 더더욱 ‘소독’이 필요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폭력행위를 가한 당사자들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해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사과했으나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다.⁵⁾ 그 혹은 그 세력의 반성이나 참회는 온데간데없고 법적 결정과 명령만 있을 뿐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보수권력은 5·18에 대해 충분히 법적제재와 보상을 진행했으니 이제 과거는 덮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있어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5·18 항쟁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5)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은 “광주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고 백담사로 향했으며, 1989년 12월 31일 다시 국회 5공 비리 및 광주특위 청문회에 나와 “군 작전지휘에 개입한 적이 없다” “책임기간에 광주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증언을 하고 백담사로 돌아갔다(김영택, 2017: 673). 이후에도 이 같은 언사는 반복됐다. 나아가 2017년에는 회고록을 출간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혹은 ‘폭동’이라고 명명하고 학살이나 발포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중앙일보, 2017.04.04).

문제는 이런 과거청산작업의 한계와는 상관없이 ‘과거청산작업’을 통해 보수 세력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절차상 5·18항쟁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애초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만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과거청산이라는 정화의식은 빠져나올 수 없는 주술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주술에 결박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박은 또 다른 역전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2.3 1980년 5월 광주의 ‘태극기’와 ‘태극기 부대’의 ‘태극기’

역전된 효과의 분명한 예는 ‘태극기’에서 찾을 수 있다. 5·18항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상징물은 ‘태극기’였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시민군은 태극기를 군용차에 매달았으며, 망자들은 태극기에 덮였다. 그리고 5·18항쟁이 40여 년 지난 오늘도 시민들은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움켜쥐고 대한민국 ‘수호’을 외치고 있다. 전자는 태극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지만, 후자는 대한민국 ‘수호자’임을 자처한다. 전자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후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죽임에 단호하다. 두 태극기 모두 죽음을 불사하지만 죽음으로써 되찾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상은 다르다. 두 태극기 모두 어떤 집단에 속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들이 속해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단히 상이하다.

이런 상이함은 ‘반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처음에 5·18항쟁은 ‘폭도’, ‘불순분자’의 폭동으로 규정되었기에 자칭 ‘대한민국 수호자’의 눈에 그에 대한 과거청산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같은 분노의 선을 따라 ‘폭도’와 ‘불순분자’는 ‘북한군’으로 진화했다. 반공을 외치는 대한민국 수호자

에게 Ctrl+C와 Ctrl+V는 불충분했다. Ctrl+A와 Ctrl+V, 전체복사로 달려 오는 수많은 ‘부유물들’, 이미지와 URL코드가 5·18항쟁에 대한 왜곡을 확대 재생산했다.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부마저도 5·18항쟁을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분노와 설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5·18에 대한 인정은 공산주의 혹은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었던 ‘조국’이 무너지는 것이고,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해왔던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부정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5·18항쟁을 직접 겪었거나 혹은 겪지 않았던 수많은 산 자들의 지나긴 5월 운동은 국가 차원의 청산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위세를 떨쳤던 ‘북한군 침투살’이 힘을 잃어 갈 무렵 ‘유공자 공세’가 시작되었다. ‘상무총정작전’과 같은 시나리오라도 있는 것일까?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무장하자 후퇴하여 외곽봉쇄로 전환하고 시민들을 고립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5·18항쟁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사회적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5·18항쟁에 대한 과거청산의 성과물이 다시 과거청산을 발목 잡는 트집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청산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면 불가능할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거청산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망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3. 혼령들의 재림, 망자들이 생전에 남긴 말과 사후의 육신

1980년 5·18항쟁 당시 광주지역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는 161명이다. 이

수는 “5·18 직후인 1980년 5월 26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광주지방검찰청이 그때까지 확인된 사망자 161명을 검시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최정기, 2001: 418). 따라서 이 글은 161명의 사망자 중 그들의 마지막 말과 사망 후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망자의 마지막 말과 시신의 모습은 증언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글은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에서 1990년에 발간한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과 5·18 기념재단에서 2005년에 출판한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 2’를 활용했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망자는 <표 3-1>과 같다.

<표 3-1>에서 보듯이,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망자의 수는 총 29명이다. 망자들의 연령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며, 직업과 사망일 역시 상이하다. 이들의 마지막 말과 형상은 주로 망자들 가족의 ‘기억’을 통해 드러났다. 가족들은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증언자료가 사건이 일어난 후 10년(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과 25년(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 2)이 지난 후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이 근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기억’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억’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첫째, 5·18항쟁은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를 잃었기 때문에 그때의 장면을 매우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가족들은 항쟁 직후부터 ‘기억투쟁’에 돌입했다. 매년 5월 망월동에서 추모제를 진행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 했다. 따라서 가족들은 망자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과 죽은 자로 돌아왔을 때의 ‘장면’을 계속 곱씹어야만 했다. 그날의 분노를 잊지 말고 계속 싸워야 죽은 자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표 3-1> 5·18항쟁 사망자

성명	나이	직업	사망일	증언자
강복원	22	운전	미상	조기녀(어머니)
강정배	29	노동자	1980년 5월 24일	강정환(형)
김경철	25	제화공	1980년 5월 19일	임금단(어머니)
김경환	20	재수생	1980년 5월 20일	김영대(큰아버지)
김명철	66	무직	1980년 5월 21일	김영훈(아들)
김영철	25	취직준비	1980년 5월 21일	김영춘(형)
김종식	43	학원전무	1980년 5월 21일	윤숙자(아내)
류영선	28	대학생	1980년 5월 23일	신애덕(형수)
문재학	17	고등학생	1980년 5월 27일	김길자(어머니)
민병대	21	노동자	1980년 5월 27일	민순자(누나), 민병생(동생)
민청진	20	기능공	1980년 5월 25일	민병률(아버지), 김정복(어머니)
박금희	18	고등학생	1980년 5월 21일	박병민(아버지), 문귀덕(어머니)
박기현	15	중학생	1980년 5월 20일	박동연(아버지), 이정애(어머니)
박민환	26	신문배달	1980년 5월 21일	정말레(어머니)
박병현	25	외판원	1980년 5월 23일	박월래(아버지)
박창권	15	중학생	1980년 5월 21일	박찬봉(아버지)
선종철	45	무직	1980년 5월 23일	김옥희(처)
안병태	25	목공	1980년 5월 21일	안병권(형)
윤재식	31	자영업	1980년 5월 21일	배용희(처)
이명진	38	자영업	1980년 5월 22일	이안식(아버지)
이성귀	17	고등학생	1980년 5월 21일	이상민(아버지)
이용충	27	자영업	1980년 5월 22일	이장충(동생)
이정연	21	대학생	1980년 5월 27일	이천균(아버지), 구선악(어머니)
임정식	19	무직	1980년 5월 22일	임정구(형)
조규영	39	노동자	1980년 5월 22일	이점례(아내) 최봉근(사촌처남)
조일기	33	주방장	1980년 5월 27일	조판열(아버지) 김복의(어머니)
한영길	31	노동자	미상	한복동(작은 아버지)
황호걸	21	고등학생	1980년 5월 23일	황길현(아버지)
황호정	64	자영업	1980년 5월 21일	임낙균(아내)

3.1 “같이 살자고 한 것이다...”

죽은 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 망월동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의 말을 듣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사후 몸의 상흔에서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들의 마지막 말을 살펴본다.

<표 3-2>에서 보듯이, 사망자들은 계엄군의 살육적인 진압에 분노하거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다. 희생되었다. 황호걸과 강정배는 계엄군이 친구를 죽였거나, 시민들을 무참하게 두들겨 패는 모습에 분노했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1235; 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5b: 201).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다. 한편으로 사망자들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진압에 잘 알지 못했거나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밖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는 곧 계엄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은 ‘데모대’도 아니고, 어리며, 무기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계엄군들은 이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특히 박기현은 중학생으로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날 계림동 책방에서 책을 사서 나오다 계엄군에게 낚아채였다. 계엄군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 박기현을 ‘데모꾼들 연락책’으로 의심된다며 진압봉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5a: 54-55;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1243). 박병현 역시 시골로 농사일을 도와주러 가다가 계엄군에게 붙잡혀 총살당한 후 군홧발과 개머리판으로 두들겨 맞았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5b: 54-55).

<표 3-2> 사망자들의 마지막 말 1

구분	성명	마지막 말
계엄군에 대한 분노	황호걸	“아버지 제 친구가 죽었어요. 공수부대 놈들이 친구를 죽였어요.”
	강정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당가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고 징허게도 두들겨 팬당게요. 참말로 나쁜 놈들이요.”
계엄군에 대한 일말의 기대	김종식	“학생도 아니고 나이 목은 사람한테 별일이야 있겠소. 얼른 갔다가 올라요.”
	김영철	“야, 우리가 데모한 것도 아닌디 뭔 일이야 있겠냐? 안 그냐?”
	박기현	“저는 중학생이에요. 동신중학교 3학년이에요. 데모 안 해요.”
	박병현	“나는 당신들에게 저항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무기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다른 사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계엄군에 대한 분노나 기대보다 자신의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다. <표 3-3>은 이들이 보여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다. 사망자들은 계엄군에게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죽어가는 광주시민들과 가족들을 걱정했다.

<표 3-3>에서 보듯이, 사망자들은 광주에 사는 이웃들과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이 중 일부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그 저 길을 걷다가, 혹은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먼저 사망자들은 지인들과 이웃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죽어가는 공동체를 보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부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니 나가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었고, 일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을 하고 차량으로 시민들을 실어 날랐으며, 총을 들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박금희는 지나가는 차를 가로막고 헌혈하고 싶으니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녀가 차량 기사에게 한 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말이 되었다.

<표 3-3> 사망자들의 마지막 말 2

구분	성명	마지막 말
이웃에 대한 애정	안병태	“근디 한 번 나가보야 쓰지 않겠냐? 사람들이 겁나게 모인갑드라.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그 처죽일 놈들 몰아낼 것이 아니냐?”
	윤재식	“그래야? 그른 나도 나가보야겠다. 나도 두들겨 맞았는디 나가보야제.”
	이정연	“아버지, 학교 정문에서 제 친구들이 얼마나 맞고 다친 줄 아십니까? 그놈들의 진압봉에 학생들이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 끌려갔어요. 어떻게 기만히 있는다는 말입니까?”
	한영길	“친구들을 놔두고 갈 수 없어요. 오전에만 있다가 오후에 들어갈게요.”
	문재학	“도청 상황실인데, 초등학교 동창인 양창근이가 총에 맞아 죽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나는 여기서 심부름이라도 하고 지내겠어요.”
	강복원	“시방 광주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네. 고속버스가 광주로 다시 들어간 당개는 내가 운전을 해줘야 할 것 같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있으소.”
	박금희	“아저씨, 헌혈하러 가는 길인데 저도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가족에 대한 걱정	임정식
조규영		“우리들은 다 군대 갔다 왔을게 걱정말고 얼릉 당신이나 애들 뒀고 피해.”
선종철		“위험허단 말이요. 공계 얼릉 들어들 갑시다. 아, 어서요.”
민청진		“아버지, 시내에서 막 최루탄을 쏘고 군인들이 사람들한테 무섭게 달려들디다. 아버지도 조심해서 땡기셔야겠어라. 겁나 무섭드랑게요.”
민병대		“공수부대들이 총을 쏘서 사람들을 막 죽인당개요. 밖은 겁나게 위험 형께 절대 밖으로는 나오지 마시오. 알았지라.”
황호정		“거기 서 있으믄 안 된단 말이시. 얼릉 이리 오게. 앉아있어도 안 된게 모다들 었드려 있어라.”
김명절		“젊은 사람인께 행여 바깥에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하라고 그 래라.”
류영선		“식아, 오늘 저녁에 군인들이 다시 쳐들어온단다. 아무래도 오늘 삼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삼촌 자전거 타고 집에 가라. 그리고 오늘은 절대로 시내에 나오지 말아라. 형이나 누나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알았자? 얼른 가라.”
이용충		“너는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부모님을 잘 모셔라.”

기독교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던 박금희는 공중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비명횡사했다. 그녀의 나이 열여덟이었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5a: 147-148). 또한, 문재학은 1980년 5월 27일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있다가 계엄군에 희생당했다. 그의 어머니는 몇 번을 찾아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사정했으나 그는 그곳에 남기로 작정했다. 그는 열일곱 고등학생이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1268).

다음으로 사망자들이 남긴 말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었다. 사망자들은 가족들을 걱정해 그들을 우선 피신시키거나 조심시키고는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등졌다. 그들도 자신이 먼저 떠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황호정은 집 안에서 아이들을 붙잡아 마루에 엎드리게 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리고 열린 창문을 닫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5a: 358). 그리고 다른 일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가족들에게 앞날을 당부하며 떠나갔다. 류영선은 도청에 남았다가 계엄군이 닥치자 다시 빠져나오다가(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5b: 395-39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794), 이용충은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군이 발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전남대를 향해 운전해 가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5b: 45).

사망자들의 마지막 말은 폭력과 불의에 대한 항거, 군에 대한 약간의 믿음, 주변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했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다. ‘계엄령 해제’, ‘전두환 타도’, ‘김대중 석방’과 같은 5·18항쟁 당시의 구호는 그들의 심경을 모두 담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광주시민을 다 죽이는’ 계엄군을 몰아내고 서로 힘을 합쳐 이 ‘난리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들은 아비규환의 구렁텅이에서 단지 같이 살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3.2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소?”

5·18항쟁 최초의 희생자는 김경철이었다. 그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 구두땀이었다. 때문에 그는 말을 남기지 못했다. 그는 아침에 딸의 백일잔치를 하고 시내에서 일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충장로 제일극장 골목 입구에서 갑자기 나타난 계엄군에 의해 두들겨 맞아 사망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군 당국이 합동으로 작성한 김경철 시신 검시서에는 ‘후두부 찰과상 및 열상, 좌안상검부 열상, 우측 상지전박부 타박상, 좌견갑부 관절부 타박상, 전경골부,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이라고 적혀 있다. 뒤통수가 깨지고, 왼쪽 눈알이 터지고, 오른쪽 팔과 왼쪽 어깨가 부서졌으며 엉덩이와 허벅지가 으깨졌다는 의미다. 사망진단서에는 후두부 타박상에 의한 뇌출혈이 직접 사인이었다(황석영·이재의·전용호, 2017: 79-80).

말을 하지 못했던 김경철은 어떤 말도 남기지 못했으나 그의 죽은 몸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경철이 아니더라도 5·18항쟁 당시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갔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마지막 몸을 통해 그들이 남긴 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표 3-4>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시신은 형체가 일그러져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구체적으로 ‘가’는 주로 곤봉에 의한 타박사를 보여준다. 곤봉에 의한 구타는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었다. 사망자의 신체는 머리와 얼굴을 비롯하여 온몸이 곤봉에 의해 구타당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김경환은 등이 대검에 세 군데나 찔렸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5a: 31). ‘나’의 경우 총상의 흔적을 보여준다. 죽은 자들은 몸은 총탄에 의해 처참히 뭉개졌다. 머리와 얼굴, 가슴을 맞은 사람들은 머리 한 쪽이 날아가거나 얼굴이 거의 없어지고, 가슴이 뺨 뚫려 있었다.

<표 3-4> 사망자들의 마지막 몸6)

구분	성명	시신 상태
가	김경철	온몸은 곤봉으로 맞았는지 시퍼렇게 어깨와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고 구 뒷발로 짓이겼는지 발가락이 으깨져 있었다.
	조일기	왼쪽 얼굴에 다발성 타박상 흔적이 있고, 양쪽 눈알이 모두 빠져버린 처 참한 몰골이었다.
	김명철	얼굴 반쪽은 아예 없고 그나마 복구 근처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김경환	머리가 터져 있고 등이 세 군데나 대검에 찢려 있었다.
나	이명진	머리에 총을 맞았는지 얼굴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이성귀	총이 뚫고 지나간 머리는 반쯤 쪼개져 나가고 없었다.
	박민환	얼굴에 총을 맞아서인지 얼굴 아래 부분이 아예 떨어져나가고 없었다.
	박창권	가슴이 행하니 뚫려 있었다.
	정찬용	가슴이 뺨 뚫려 있었다.
다	이정연	어깨에도 총을 맞아 피투성이고 혀가 입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이복일	얼굴에 두 발의 총탄을 맞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문재학	총알이 입속으로 관통했는지 입이 거의 뒤숭그려졌고 목과 머리 뒷부분 에 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또 왼쪽 가슴에 큰 구멍이 있었다.
	서호빈	복부 관통상을 당했고 허벅지도 총에 맞아 피를 흘린 채 죽어있었다.
	황호걸	얼굴은 맞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거무죽죽했고 하복부에 총 세 발 이 관 통했다.
	장재철	재철이의 눈, 어깨, 가슴, 무릎에 총을 맞은 자국이 있었다.
	전재수	자그마한 아이의 허리에서 대퇴부 사이를 무려 여섯 발 이상의 총알이 지났다. 배와 다리 사이가 만신창이가 되어 재수는 즉사했다.
	박현숙	일곱 발의 총알을 맞은 것이다.
	고영자	오른쪽 어깨는 다 타버린 듯했다. 양쪽 가슴에 난 총알 구멍. 그리고 얼 마나 많은 총을 쏘았는지 아래쪽은 벌집 쑤서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김춘례	가슴을 관통한 M16총탄은 그녀의 등에 12센티미터에 이르는 총창을 냈 고, 하복부는 총에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6) 이 글은 사망자의 사인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시신의 형상이 말해주고 있는 것에 주목
하기 때문에 ‘광주지검 검시조서’의 ‘신체적 상해장소명’을 언급하지 않는다. 표에서 언
급된 내용은 유족과 지인들이 증언하는 시신에 대한 묘사이다. 정확한 사인은 ‘5·18사
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중화운동자료총서』 20, 광주광역시, 1999, 325쪽·667쪽 광
주지검 검시조서’ 참조.

‘다’는 ‘나’와 같이 총상의 흔적을 보여주지만 두 발 이상의 총탄을 맞아 시신이 난자당한 경우이다. 여러 발의 총탄을 맞았기 때문에 시신의 형상은 ‘나의 경우보다 더 처참했다. 몸의 여러 곳에 구멍이 나 있었으며,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가슴과 하복부에 ‘벌집을 쭈셔놓은 듯’ 총탄이 집중되었다. 총상은 작은 총알구멍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 맞은 경우 뒤통수가 뺨 뚫려 있어서 유족들은 부직포 봉치로 그 부분을 메워야 했다. 게다가 유족들은 이미 시간이 흐른 뒤에 시신을 발견한 경우가 많았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거나 몸의 일부가 없는 시신들이 부풀어 올라 관이 짹짹 갈라지고 썩은 물과 핏물이 그 틈으로 흘러나왔다.

죽은 자의 형상은 계엄군의 잔악무도한 살육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진압명령과 발포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계엄군의 살상행위는 너무나 과한 것이었다. 이 행위는 한국전쟁 시기 자행된 양민학살 그것과 같았다. 그렇게까지 무참히 죽여야 했을까? 계엄군의 광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시민들의 무장과 뒤이은 동료들의 죽음(그들 간의 오인 사격 포함)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시 학살의 역사적 경험이 면면히 상속되어 그들을 망동하게 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 광기와 악습의 구조를 깨야 한다는 것을 망자들의 몸이 말해주고 있다. 단순히 조사하고 법을 만들어 기념하고 보상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또한, 시신의 흔적은 역설적으로 계엄군의 ‘광기’ 이면에 자리 잡은 ‘분노’와 ‘공포’를 보여주기도 한다. 계엄군에게 있어서 시민들은 이미 자신들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시민들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도’이자 ‘불순분자’였다. 그리고 여기에 사적 감정이 더해졌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해를 가하고 심지어 동료들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인간들로 인식되었다. 계엄군들 역시 시민들에게 분노했고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살육행위만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곧바로 계엄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감정과 행위가 사망자들의 몸에 새겨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탈주술, 가리앉은 것들의 부상과 불가능한 화해를 위하여

이 글은 5·18항쟁 과거청산의 주술적 결박을 해제하고 망령들을 내쫓기 위해, 항쟁 당시 희생자의 혼령들을 소환하여 어찌할 바 모를 상황을 어찌해보려는 일종의 굿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청산작업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시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염을 하는, 몸을 낮춰 예를 표하는 행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소독을 조건으로 배제된 자를 포함하는 행위이자 끊임없는 방역작업이었다. 야생의 울음을 지닌 산 자들의 신체가 국가에 포획된 순간 산 자들은 제도적 청산이라는 철창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산 자들은 그들이 내어 준 밥을 먹고, 그들의 기준을 따라야 했다. 애초에 산 자들이 의도했던 과거청산의 충만함은 정형화되고 단순화되었다. 예컨대 망월동 신(新)묘역에서 추모와 묵념은 모든 것이 탈각된 허무와 같았다. 많은 것을 얻었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 반면에 망월동 구(舊)묘역에서 추모는 늘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다. 구(舊)묘역은 언제나 미안함과 슬픔이 요동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과거청산과정을 거친 후 가슴을 진동케 했던 그 ‘무엇’은 사라지고 위압적인 경관과 엄숙함만이 남게 되었다.

그 외중에도 국가에 의한 폭력적 진압행위는 계속되었고, 국가는 폭력을

행사한 후에 진상을 조사하고 유감을 표하는 이상한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5·18은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 과연 과거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거청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것의 한계가 분명하다면 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판을 걷어치워야 한다. 걷어치우는 것이 어렵다면 그 판에서 빠져 나오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과거청산은 어떤 대가를 수령하고 숭고함을 획득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을 걷어치운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것은 어쩌면 망자들의 마지막 말과 마지막 몸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 망자들은 계엄군의 살육적인 진압에 분노하거나 계엄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안고 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계엄군에게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죽어가는 광주시민들과 가족들을 걱정했으며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평화롭게 같이 사는 일상을 되찾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마지막 형상은 계엄군의 만행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 만행은 계엄군의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광기의 표출이었다. 광기의 구조적 패턴뿐만 아니라 사적 감정마저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이 망자들이 남긴 몫이다.

망자들의 유언은 한 마디로 ‘같이 살고 싶으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밥을 먹을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살아 끝없이 외쳤던 자, 살아남았지만 말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자, 항쟁을 경험했던 모든 자·피아의 구분 없이 들을 위한 밥상을 마련해야만 한다. 총을 들었던 자, 트럭에 탔던 자, 밥을 주었던 자, 골목과 집에서 숨죽였던 자, 피난 갔던 자, 그리고 반대에 서서 숨을 헐떡였던 자들(정보요원과 군인들 등)에게도 자리를 권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와 행위, 감정에 대한 인지와 인정 없이 불가능하다. 당신도 한 인간이었고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그것의 상은 서로 달랐을지라도) 공동체를 위한 발로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그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그리하여 고정되어버린 격자 위로 수많은 잔여들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항쟁을 겪었던 모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흘러넘치게 하는 것과 동시에 5·18항쟁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묵도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도 무대 위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들이 사태를 관조하는 수동적 관객으로 머물수록 정화의식은 공고해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들 역시 정화의식 특유의 논리와 기운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사과, 처벌이 없는 청산, 물질적 배상과 기념의식만 있는 정의는 미래의 어느 날, 거리를 두고 정화의식을 바라만 봤던 관객들을 상대로 재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관객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사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반쪽짜리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무대 위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품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집단적이고 동질적인 형태를 띠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회적 청산작업에 동참할 수 있다. 피해자들에게(심지어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 있는 군인들에게까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 그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자조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피해를 입었거나 증언을 위해 용기를 낸 자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 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뒤에서 수군대는 방식이 아니라 앞에서 껴안고 공감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도 충분할 수 있다. 여러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2017년 5·18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

령의 따뜻한 말과 포용을 보고 처음으로 치유 받은 기분을 느꼈다”고 힘겹게 토로했던, 항쟁에서 살아남았으나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살았다는 한 항쟁 참여자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분명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았던가? 혹시 그 여정의 끝에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소?”라는 망자들의 물음에 군화를 신었던 자들이 응답할 수도 있다. “그때는 당신들이 너무 밍고 무서웠어. 글고 제정신도 아니었제.”

그 전에 망자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나저나 애썼소. 미안하요.”

투고일 : 2019. 8. 28 심사기간 : 2019. 9. 9 ~ 18. 게재확정일 : 2019. 9. 20.

| 참고문헌 |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엮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 5·18기념재단, 2005a.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엮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2』, 5·18기념재단, 2005b.
- 김양래, 『5·18진상규명활동과 세계화』, 『오월교육원칙과 교육활동: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오월이야기』, 5·18기념재단, 2016, 9-24쪽.
-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0권, 광주광역시, 1999, 325-667쪽.
- 김영택, 『5월 18일, 광주』, 역사공간, 2017.
- 나간채, 『5월의 사회운동』, 한울, 2012.
- 노영기, 「10년 전의 기억, 새로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186-220쪽.
- 이광일, 「5·18 연구 「과거청산과 민주주의·5·18민중항쟁, ‘과거청산과 재구성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4(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 171-197쪽. UCIG704-001616.2004.4.2.004
- 이영재, 「5·18 연구 「과거청산과 민주주의·5·18 사법적 처리의 의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4(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 241-270쪽. UCIG704-001616.2004.4.2.007
- , 「과거사 피해보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광주민중항쟁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보상과 국가배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199-234쪽. UCIG704-SER000002793.2010..23.001
- 정호기, 「국가폭력과 피해자 보상」. 『민주주의와 인권』 6(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113-145쪽. UCIG704-001616.2006.6.1.005
- 최정기,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지역사회연구』 14(2), 한국지역사회학회, 2006, 3-22쪽.

UCIG704-001492.2006.14.2.005

_____, 『5·18과 양민학살』,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404-440.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한인섭,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3(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87-237.

한인섭, 『5·18재판과 사회정의』, 경인문화사, 2006.

황석영·이재의·전용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센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5%E3%86%8D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A%B4%80%EB%A0%A8%EC%9E%90%EB%B3%B4%EC%83%81%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19. 4. 23 검색.

국가법령센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5%E3%86%8D18%EB%AF%BC%EC%A3%BC%EC%9C%A0%EA%B3%B5%EC%9E%90%EC%98%88%EC%9A%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19. 4. 23 검색.

중앙일보, 한영혜, “전두환 회고록 “5·18은 ‘폭동’, 발포명령 없었다”...자위권 행사 주장”. (2017.04.04.). <https://news.joins.com/article/21436628>, 2019. 4. 23 검색.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검색 ‘염승,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3-CKD-1240001&dataID=00010254@AKS-2013-CKD-1240001_DIC, 2019. 4. 23 검색.

The Occult Ritual and Reappearance of Revenant - The Study on the Transitional Justice of the May 18 Uprising -

Kim, Hyung-ju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ransitional justice of the May 18 uprising in order to build a new aspect of it. This study has analysed the meaning and effect of the transitional justice which the state had took lead, and sought the pursuing aim and direction of the transitional justice. First, the transitional justice by performing the state was the standard ritual. It has removed the survivors' voice little by little by means of an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procedure. Second, It was also a fumigation which pretended to be a purification ritual, on the lives of the socially excluded-victims of the May 18 uprising. The state fixed victims in the law boundary instead of recovering their honour. The main problem is that the constructive criticism of transitional justice was blocked since the state, procedurally, has investigated the fact of uprising, punished the convicts, compensated to victims. To solve those problems and find some ideas to overcome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explored the victims' voice, who were killed by martial law military, in the documents included victims' last statement which their family members remembered and victims' last body which doctor described. What the victims' talking is that 'we want to live together peacefully so do not suppress brutally.' Thus, this study suggest that transitional justice must be led by citizen, not the state, give all the people, included citizen and military who were in Gwangju when the May 18 uprising occurred, a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 uprising. And anll the citizens must take part in fulfilling the social, cultural transitional justice.

Keywords : May 18, Gwangju Uprising, Transitional Justice

